

'95 결산검사지적사항조치결과

달 서 구

'95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구분	소관부서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세 입 분 야	징수과	○ 회계수치 부정확	<p>○ '90체납세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액 집계와 전산자료의 차액이 발생한 원인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전산에 의한 체납자 관리가 처음 도입되면서 방대한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 전산지식이 없는 직원들의 자료관리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p style="text-align: center;">[차액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세 체납금액이 징수부 - 23,382,910원, 전산집계 - 23,384,970원으로 전산집계가 2,060원(1건) 많음. <p>☞ 확인내용</p> <p>'89년도 징수부에 년도정정할 2,060원을 착오기장('90년 징수부)하여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 체납금액이 징수부 - 13,390,040원, 전산집계 - 16,832,400원으로 전산집계가 3,422,360원 많음. <p>☞ 확인내용</p> <p>- '90. 12. 10 징수결의분 기장누락 2,080,990원(12건)</p>

구분	소관부서	지 적 사 · 항	조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 12. 10 징수결의분 소방공동세 기장누락 978,770원(14건) - 과오납미환불금 336,750원 - '95. 12월 수납분 체납전산 미정리(삭제) 45,850원 (3건) 색출확인하여 정리하였음. • 종토세 체납금액이 징수부 - 42,096,932원, 전산집계 - 32,748,650원으로 징수부가 9,348,282원(85건) 많음. ※ 확인내용 - 징수결의 집계 착오 12,026,260원(62건) 징수결의금액 3,500,588,190원 수납부금액 3,488,561,930원 - '91. 6. 30 감액분중 '91년도 감액분을 '90년도 징수부에 착오기재 △2,391,680원(8건) - '90. 12월 감액분 기장누락 196,540원(12건) - '91. 2월 과목정정분 균세를 시세로 이기누락 △8,268원 - '95. 12월 수납후 전산미정리 △774,570원(5건) 색출정리함.

구분	소관부서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소세 체납금액이 징수부집계 - 2, 187, 049원, 전산집계 - 5, 607, 020원으로 전산집계가 3, 419, 971원(19건) 많음. ☞ 확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분 영수제액분 징수결의누락 : 1, 808, 541원(1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월자납분 : 412, 765원(3건) 4월 영수제액 통보분 : 305, 006원(3건) 7월 자납분 : 601, 610원(2건) 10월 영수제액 통보분 : 123, 000원(1건) '91. 1월 영수제액 통보분 : 366, 160원(3건) - 이중수납 과오납미환불 1, 045, 290원(9건) - 전산체납부정리 누락('92결손분) 232, 210원(2건) - 전산체납부정리 누락('90. 8월 감액분) 333, 930원(3건) 색출정리함.
		○ '95출납폐쇄기 영세 민특별회계 잔고 불일치	○ 영세민특별회계의 결산서상 잔액은 187, 581, 333원이며, 잔고증명서상 잔액은 182, 581, 333원으로 5, 000, 000원이 차

구분	소관부서	지 권 사 항	조 치 별 례																
			<p>이가 나는 것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특별회계 반납분을 일반회계로 차금반납을 하였기 때문임. - 차액분은 '96.5.8 일반회계외차 특별회계로 전처한영함 																
		<p>○ 면허세 미수납액의 체납전산자료 집계와 징수부집계 불일치</p>	<p>○ '95면허세의 체납금액이 징수부상 - 145,227,000원, 전산집계 - 137,771,750원으로 전산집계가 52,543,750원이 많음.</p> <p>☞ 확인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금조정 누락분 34,765,750원(30,590건), 징수부등록 누락분 17,778,000원으로 조사되어 '96.6.30일 정정 조치하였음. - 이는 직원 업무미숙으로 인한 양오이므로 앞으로 실무교육과 업무연한을 통하여 업무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였음. 																
		<p>○ 미수납액 증가 '95 일반회계 총미수납액이 2,831,342천원으로 전년도 1,669,371천원보다 1,161,468천원</p>	<p>○ 미수납액 현황</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백만원</p> <table border="1" data-bbox="805 1556 1364 1780"> <thead> <tr> <th>구 분</th> <th>'94년</th> <th>'95년</th> <th>증가율</th> </tr> </thead> <tbody> <tr> <td>일반회계</td> <td>1,670</td> <td>2,831</td> <td>69.5%</td> </tr> <tr> <td>지방세</td> <td>1,138</td> <td>1,343</td> <td>13%</td> </tr> <tr> <td>세외수입</td> <td>532</td> <td>1,488</td> <td>179%</td> </tr> </tbody> </table>	구 분	'94년	'95년	증가율	일반회계	1,670	2,831	69.5%	지방세	1,138	1,343	13%	세외수입	532	1,488	179%
구 분	'94년	'95년	증가율																
일반회계	1,670	2,831	69.5%																
지방세	1,138	1,343	13%																
세외수입	532	1,488	179%																

구분	소관부서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69.5%)증가, 세 입징수에 상당한 문 제점으로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손처분 : 128, 148천원• 실제미수납액 : 2, 703, 194천원지방세 - 1, 288, 024천원세외수입 - 1, 415, 170천원 <p>※ 세외수입채납액증가 내용 : 교통관련 과 태료(264백만원), 개발부담금(540백만 원)으로 전체미수납액의 54.0%를 차지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수납액이 전년대비하여 상당액수가 증 가하고 있어 세입징수 목표에 상당한 어 려움이 있음.• 지방세에 있어 주요증가 요인은 최근 기 업체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부도등이 채 납액 증가의 원인이며 부도로 인한 채납 기업체는 신성섬유(대전555)외 20개업 체임(130백만원)• 채납세 정리계획 연 3회에 걸쳐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추진<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4월 ~ 5월- 2차 : 9월 ~ 10월- 3차 : 12월 ~ 2월 <p style="text-align: center;">【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납자에 대한 재산, 주소 추적

구분	소관부서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진납부 독촉장 발부 - 인, 허가시 완납확인제 시행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특별기동체납처분반 편성 운영(2개 반) - 재산압류 공매의뢰-성업공사 •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정리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액정리 대책 보고회 개최(8.28) - 각실·과, 소별 자체계획수립 및 담당 직원 책임제 확행 - 체납액정리기간 설정 <p>연 3회 실시 등으로 미수액정리에 노력을 경주하겠음.</p>
교통 관리과		○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증가	<p>○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건수 : 39,547건, 금액 : 1,353,136천원) 징수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압류조치하고 수차례 걸쳐 체납액고지서 발부를 통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으며, '96.9.30일 현재 6,358건 222,130천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음. (체납액의 16.4%)</p> <p>○ 그러나,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에 비하여 주차공간 부족과 주차에 대한 질서의식 결여로 앞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p>

구분	소관부서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p>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액채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등 강력한 체납액 정리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경 영 관 리 실		○ 사업소에 타용도 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소세로 징수한 금액을 그대로 세출 예산에 편성하려면 특별회계로 운영하여야 하나, 환경개선 및 정비사업은 환경보전, 공해방지, 청소, 도로하수도정비, 공원조성, 주거환경개선 사업등 여러분야의 사업이 대상이 되므로 사업소세 수입으로는 그 세출을 감당할 수 없어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모든 수입을 수입으로 하여 세출예산을 계상하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거 일반회계로 편성운영 하고 있음.○ 현재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세 징수금은 '95년도에 27억2천만원이나, 환경개선과 정비에 관련되어 투입된 예산은(공해방지, 청소업무의 경우) 약 95억4천만원임.○ 환경개선 및 정비를 목적으로 징수한 사업소세는 모두 투자하고도 크게 부족한

구분	소관부서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p>실정이므로 사업소세 징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됨.</p>
	세 무 과	<p>○ 성서공단 입주기업의 임대부분에 대한 징수실적이 없음.</p>	<p>○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지방공단 최초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토지 취득후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감면대상업체가 감면대상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면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추징토록 규정 하였음.</p> <p>'95년 한해동안 성서공단 지역의 임대부분에 대한 추징실적은 85건 60,800천원이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 38건 55,168천원 - 재산세 : 26건 2,222천원 - 종합토지세 : 21건 3,410천원임. <p>○ 동 감면조항의 임대부분에 대한 추징조항은 '95. 12. 6일자로 개정되어 '96. 1. 1일 부터는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임대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추징사유가 소멸되었음.</p> <p>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정관련 홍보에 주력하여 자진 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음.</p>
	징 수 과	<p>○ 세입총괄표 지방세</p>	<p>○ 현 결산서에는 세입총괄표에 지방세, 보</p>

구분	소관부서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항목란을 세목별로 작성요	통세, 목적세까지 분류되어 상세한 세목은 생략되어 있으나 결산서 35p에 세입결산 내용이 세목별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면 될 것으로 생각됨.
세출분야	건설과	○ 사고이월비 증가	<p>○ '95년도 건설사업은 영남고네거리 도시가스 사고발생 및 보상민원이 많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비가 증가하였음.</p> <p>○ 앞으로 보상협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상협의 대상토지 및 지장물건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인 보상독려로 보상협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p> <p>○ 또한 보상협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구. 동직원으로 보상협의반을 구성, 신속한 보상미원 상담 및 민원해결로 사고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p>
	경영관리실	○ 불용액 증가	<p>○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전년대비 0.1%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3억원이 증가되었음.</p> <p>○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사업의</p>

구분	소관부서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p>타당성, 경비지출의 효율성, 비유호부분 적, 산출기초의 정확성등 소요비를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을 대상으로 하고</p> <p>○ 계획변경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추경 예산 편성시 삭감조치하여 조기의 투자 자원화하여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집행함.</p>
		<p>○ 인건비, 물건비를 줄여 건설, 사회복지분야 투자 개선방안 강구</p>	<p>○ 우리구는 인구가 48만5천명으로 대구시에서 제일 많을 뿐만 아니라 날로 증가하고 있어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공무원 34명이 증원되어, 증원된 공무원수와 인상된 보수의 비율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되었으며 물건비 내에는 인건비 성격인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증가되었음.</p> <p>○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부분에 대하여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경상경비의 설정기준을 차관 운영, - 전세청, 소모성경비, 불요불급경비의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예산달달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p>○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상경비의 감소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감감된 예산은 조기에 투자사업화 하여 사회복지분야와 건설사업 등에 최대한 투자되도록 하겠음.</p>